치매공공후견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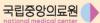


간행물 등록번호

NMC-2024-007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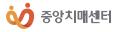












추천사



인간다운 삶의 본질은 각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의 권리는 치매에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치매환자의 판단능력 부족에만 주목한 나머지, 그들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지나치게 소홀히 대해 왔습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중 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치매공공후견인들은 단순 한 법률적 대리인을 넘어 치매환자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그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북의 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후견인들이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 상황에서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 진 가이드북은 치매환자의 잔존 능력을 존중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의 치매공공후견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치매환자의 인권 증진에 새로운 이정 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이드북의 실천입니다. 치매환자의 뜻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내심의 의사를 끌어내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때로는 불완전해 보이는 결정이라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실천하고 그 부족한 점을보완해 나감으로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공동체로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소순무

목 차

1

치매화자의 의사결정을 왜 지원해야 하나요?

- 1) 치매환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 / 08
- 2) 의사결정 지원의 의미 / 10
- 3) 의사결정 지원의 중요성 / 12

2

후견인의 사무 및 의사결정 지원 역할이 무엇인가요?

- 1) 후견인의 선임 / 16
- 2) 후견인의 후견 사무 / 17
- 3) 후견인의 권한 / 20
- 4) 후견인이 하는 의사결정의 유형 / 21
- 5)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시 부딪히는 질문 / 25

3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1) 의사결정능력의 의미 / 32
- 2)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원칙 / 33
- 3)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방법 / 35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이렇게 합니다.

- 1)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원칙 / 40
- 2) 의사결정 지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 42
- 3) 의사결정 지원과 의사결정 대행의 관계 / 54
- 4)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대행의 방법 / 56



의사결정 지원 사례, 이렇게 실천해요.

- 1) 주거와 돌봄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례 / 62
- 2) 재산 관리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례 / 69
- 3) 의료,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례 / 76
- 4) 어려운 의사결정 지원 사례 / 80

6

맺음말

본 가이드북은

어떤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각 개인의 상황이나 상태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가이드북은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나 선호, 희망을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적 조치와 판단 근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을 소개하여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후견인은 본 가이드북을 통해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정답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과 긴밀히 논의하고 후견지원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왜 지원해야 하나요?

- 1) 치매환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
- 2) 의사결정 지원의 의미
- 3) 의사결정 지원의 중요성

치매환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

누구든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자 권리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실현적 삶은 생활관계를 만들어가는 나날의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치매환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저하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 중요한 법적 결정을 잘못하여 재산상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결정(동의)할 수 없어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후견개시심판을 하여, 중요한 법적 결정(계약 등 법률행위)을 할 수 있는 자격(행위능력)을 제한하고,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법정대리권)을 부여해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법적 결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시설 입소 여부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법원은 후견인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에게 신상결정권이 없으면 사실상 근친의 가족이 그러한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입니다.

제3자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중요한 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 후견인은 치매 환자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민법 제947조는 "성 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접근은 아동 보호에 적용되는 관점과 유사합니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과거에는 치매환자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된 사람에게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어린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를 어린 아이처럼 취급하는 것은 치매환자를 언제나 타인에 의존하여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정신능력의 결여나 부족을 이유로 그 사람의 법적능력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치매환자는 고령자이면서 동시에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여, 모든 장애인은 법 앞에 동등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능력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협약 제12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아니라, 법적능력 행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능력(mental capacity)과 법적능력(legal capacity)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정신능력의 부족이나 결여를 이유로 어떤 사람의 법적 결정을 내릴수 있는 능력(법적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평석 제1호 - 협약 12조에 관하여).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종래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제도로 규정하고, 이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할 것을 거듭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받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으며, 이미 법률 개정을 마친 나라들도 있고 논의 중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사정으로 아직 본격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민법 개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거의 낡은 관념에 따라 후견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치매환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가 개혁되기 전이지만, 현행 제도 틀 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후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947조의 '본인의 복리'는 후견인의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복리가 아니라, 피후견 인 본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고려한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가이드북은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후견인을 중심으로, 치매환자를 돌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치매환자의 의사와 선호, 희망을 존중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2 | 의사결정 지원의 의미

의사결정 지원이란 '피후견인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선택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이끌어내거나 전달하는 것 역시 의사결정 지원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 지원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취하는 모든 실질적인조치로 일상적인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의사결정 지원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며,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후견인이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의사형성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피후견인이 의사를 표명하도록 지원(의사표명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사형성 지원이란 피후견인이 본인의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할 때,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의사를 묻고 시설 안내 책자나 사진을 보여주며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본인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명 지원이란 피후견인이 형성한 의사를 외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인이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거나,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등 결정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를 잘 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의사결정 지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의사결정 자체는 피후견인 본인이 스스로 내린다는 점에서, 제3자인 후견인이 대신 결정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대리 결정(대행 결정)

대리 또는 대행 결정이란, 피후견인 본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행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원의 심판으로 법정대리권 또는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은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신상 결정을 대행**할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이외의 결정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리나 대행 결정은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국 본인의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이 모두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의사결정능력의 추정). 따라서 후견인은 대리권이나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우선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지원의 중요성

"치매화자의 의사결정을 왜 지원해야 하나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환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시작입니다.

◇ 치매환자는 우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매환자를 의사결정과정의 중심에 두고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치매로 인하여 스스로 권익을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의사결정능력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치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경미한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감소로 시작하여, 후기에 이르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의사결정능력이 점차 저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결정능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 진행되며 의사결정능력이 감소하더라도, '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은 치매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그의견을 참고합니다. 다만, 치매환자는 다른 사람들의 지원 없이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의사결정 지원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결정부터 복잡한 결정까지, 치매환자는 자신에 관한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의사결정지원은 중요합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치매환자가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화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당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지원은 치매환자를 부당한 영향력이나 학대에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평소 선호도와 가치관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치매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의사결정지원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치매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중요한 지원이며, 이는 더 포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후견인의 사무 및 의사결정지원 역할이 무엇인가요?

- 1) 후견인의 선임
- 2) 후견인의 후견 사무
- 3) 후견인의 권한
- 4) 후견인이 하는 의사결정의 유형
- 5)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시 부딪히는 질문

1 | 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이 "○○○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의 업무는 후견개시심판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피후견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후견인후보자로 추천되었다면 법원의 선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피후견인을 대면하여 친숙해지고, 피후견인의 생활 여건, 가족관계,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후견인으로서 긴급히 처리할 사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희망 또는 선호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피후견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치매화자는 질환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인지 및 소통 능력이 달라지거나,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후견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피후견인과의 대면 접촉의 기회를 많이 확보하는 등 피후견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뢰관계(rapport)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후견인의 활동은 후견감독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감독사무를 지원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담당자와 피후견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후견활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 후견인의 후견 사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하여 어떤 일(후견사무)을 하는 건가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권리 행사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중요한 법적 결정에 필요한 조력과 지원을 하며,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본인을 대신하여 그 법적 결정을 대행하는 역할과 임무를 갖습니다.

원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견사무는 크게 나누어 1)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2)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 3) 가족관계에 관한 사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사무**는 피후견인이 보유한 재산의 보존·관리·처분, 경제적인 수입·지출 계획과 관리, 금융계좌의 개설과 해지 등 경제생활에 관한 사무로서 후견인은 그 중에서도 법원이 후견사무로 지정한 사항에 한하여 사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상보호사무는 피후견인의 생명, 건강, 신체, 자유, 프라이버시 등 널리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로서, 의료행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시설 입소 등 주거를 결정하는 것, 특정인과 연락·면접·교류하는 것,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당연히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원으로부터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피후견인의 이익 보호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신상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므로, 후견인은 신상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권한이 없더라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 유지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입원이나 수술 등 의료계약을 지원 또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에게 의료기관에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료행위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때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신상결정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피후견인이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후견인은 의료기관에 피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후견인은 동석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효과나 부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 비로소 후견인이 권한에 따라 의료행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공공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보통 신상결정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결정권이 없는 후견인은 동의를 할 수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동의해 줄 것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없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이러한 사정을 밝히고, 피후견인에게 직접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후견인이 동석하여 의료진의 설명을 피후견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피후견인의 뜻을 의료진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보호자로서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의 이익과 평소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후견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또는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민법 제734조 이하)에 따라 동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피후견인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을 후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 의료 동의권의 부여를 청구하거나(민법 제959조의8 참조), 또는 후견감독인(치매안심센터), 피후견인의 친지 등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밖에 후견사무로 **가족관계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후견사무는 혼인이나 이혼, 입양과 파양 등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것으로 피후견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관한 사무는 성년후견 유형에서만 인정됩니다. 성년후견 유형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성년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인정하는 등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제3자가 대리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은 의사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족관계의 형성에 관하여 악의를 가진 제3자에 의하여 잘못 유도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피후견인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 가족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후견감독인(치매안심센터), 피후견인의 친지 등과 상의하여 필요 시 적절한 의사결정지원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후견인의 권한

"후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후견인은 어떤 권한을 갖나요?"

민법은 후견유형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널리 적용되는 특정후견의 경우, 민법은 특정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을 후원하고 대리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민법 제959조의9), 그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는 법원의 후견심판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후원은 피후견인의 사무를 조력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추가하여 특정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후견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러한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이 적용된 경우에는 특정후견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4). 한정후견에서도 의사결정지원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정후견인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과는 달리 법원이 일정한 범위의 사무에 대하여 동의유보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동의유보의 결정이란, 피후견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예: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의유보의 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피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유보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인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동의할 권한과, 동의 없이 피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4

후견인이 하는 의사결정의 유형

후견인이 되면 다양한 후견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후견사무는 본질적으로 피후견인의 중요한 법적 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결정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동의나 시설입소와 같은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후견사무에는 법적 결정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법적 결정은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각종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고,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은 시설입소 결정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와 같은 신상결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후견인은 법적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피후견인에게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통원 진료를 동행하는 등의 사실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행위는 법적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의무로써 이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결정을 할 때, 후견인은 어떤 관점에서 피후견인을 지원하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까요? 종전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나 선호가 판단능력의 결여나 부족을 이유로 무시되고, 후견인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피후견인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후견활동의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점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지원의 관점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는 피후견인의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후견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에 비추어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 결정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 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과 그 실현을 위한 지원

-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그 의사를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후견인 등 지원자들이 볼 때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그의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나 희망, 선호에 따라 결정하도록 지원

- 지원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지 못할 경우, 후견인은 이를 피후견인에게 쉽게 설명하고 선택안을 제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그의 의사나 희망, 선호가 실현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후견인은 의사결정지원을 명목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피후견인은 인식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능력도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당한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지원 과정을 후견감독인(치매안심센터)과 공유하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의사결정지원이 후견인의 독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협력해야합니다.

③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기초한 대리 결정

-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후견인이 본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후견인은 본인이 원하고 희망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후견인이 과거에 표시한 의사나 생각, 윤리적 가치관,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후견인을 잘 아는 가족, 친지, 지인, 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확정하는 것은 반드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확정할 경우 결국 타인의 결정이 피후견인의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후견인의 의사 지배를 은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객관적 근거들을 종합하고 후견감독인(치매안심센터)과 공유하여 피후견인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바탕으로 추정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④ 피후견인의 관점에서 최선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한 대리 결정

- 본인의 의사나, 선호, 희망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피후견인이 살아온 경험이나 태도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라는 주관적 관점에서 법적 결정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도 후견감독인(치매안심센터)과 상의하여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후견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자의에 의하여 최선의 이익이 판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⑤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대리 결정

- 본인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에 따르면 중대한 손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에 따르면 본인에게 재산 또는 신상에 중대한 손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와 피후견인을 보호할 의무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결정이 비합리적이거나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보다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후견감독인(치매안심센터)과 의논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⑥ 후견인이 할 수 없는 결정

피후견인이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후견사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후견인의 권한 밖의 사항,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자원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현시키는 책무가 있지만, 때때로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이 후견인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윤리관,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감독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예외적으로 후견감독인에게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결론적으로 후견인은 객관적·합리적으로 피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추정적) 의사나** 희망, 선호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법적 결정을 대리해야 합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을 대면하여 소통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시 부딪히는 질문

치매환자인 피후견인의 의사와 희망, 선호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할 때, 후견인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당혹감이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 ① 후견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 ② 후견인이 의사결정 지원을 하려고 해도 피후견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③ 피후견인의 치매 정도가 중하고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워, 본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④ 피후견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되는 결정을 고집하는 경우에도 이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가?
- ⑤ 피후견인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하거나 검사나 수술 등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나, 본인 스스로 동의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후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가?
- ⑥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이나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①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청소, 세탁, 식사준비, 간병 등의 사무 처리나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일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⑧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신뢰관계가 지나치게 두터워져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도리어 피후견인의 자율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질문 ^c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을 위한 대리권이 부여된 이상 대리권이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 아닌가?"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 존중의 이념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는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한에서의 자기결정 존중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행위능력)은 제한되며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행사에 따라야 합니다. 피후견인 본인을 대신하여중요한 법적결정을 하는 것이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된 법적 수단이기때문입니다.

이 때, '후견인 자신의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피후견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 라는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체의사결정(substitute decision-making)입니다. 대체의사결정은 피후견인을 후견인의 결정에 복종하게 하여,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부인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반하여 의사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 개념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피후견인이 부족한 의사결정능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 희망,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지 않았다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쉽게 단정하여 법정대리권 행사로 넘어가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지원의 원칙에 따른다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더라도 먼저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질문 ^c ② c

"후견인이 의사결정 지원을 하려고 해도 피후견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후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조력과 지원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후견인은 자신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여 피후견인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결정을 대신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정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치매 정도가 중하고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워, 본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추정하여, 그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희망과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 원칙, best interpretation).

이 과정에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과거에 표명한 의사나 생각, 가치관, 신념을 고려하고, 피후견인이 살아온 삶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후견인을 잘 아는 가족, 친지,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c ④ c

"피후견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되는 결정을 고집하는 경우에도 이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 해야 하는가?"

피후견인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하여 예측되는 손해와 불이익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피후견인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고수한다면, 후견인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에 따라 후견사무를 처리하였다면, 후견인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에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에 따를 경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 중대한 위험 또는 불이익이 발생이 예상되고, 피후견인이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거나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나 불이익이 중대한 위험이나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결정이 피후견인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적절한 판단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치매안심센터), 피후견인의 가족, 친지 및 신뢰하는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필요 시 가정법원의 후견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c ⑤ c

"피후견인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하거나 검사나수술 등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나, 본인 스스로 동의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후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가?"

입원·입소나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피후견인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사항입니다. 이는 재산관리와 같이 이해득실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며, 본인 고유의 판단과 선호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 여부는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자기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후견인이 의식불명으로 의사를 전혀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나 선호, 희망을 추정하여 그 추정적 의사에 따라 입원·입소나 의료행위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사전에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 또는 동행인이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한편, 입원·입소나 치료행위 거부로 인해 피후견인의 건강상 중대한 불이익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후견인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대리 결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로서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특정후견인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추가로 권한 부여를 위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8조의 제3항, 제4항). 특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서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8). 다만, 이와 관련된 판례와 학설이 엇갈리므로 반드시 인용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 ^c ⑥ c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피후견인의 의사나 희망이 있더라도 적절한 경제적 자원이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실현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 후견인은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급여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등 공적 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공무원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질문 ^c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청소, 세탁, 식사준비,
 간병 등의 사무 처리나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일 처리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권리 행사와 무관한 사실상 노무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의 사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피후견인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일이 실현되도록 돕거나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피후견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c ⑧ c

c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신뢰관계가 지나치게 두터워져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도리어 피후견인의 자율성이 c 최해될 위험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후견인이 후견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조력에 잘 따르고 순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과의 신뢰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고, 후견활동의 기반으로서 장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피후견인이 맹목적으로 후견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후견인의 의사를 사실상 지배하여 피후견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후견인의 윤리적 문제이자.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결정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피후견인 스스로 본인의 의사나 희망, 선호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적절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한다면 피후견인 본인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후견인의 의사에 지배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1) 의사결정능력의 의미
- 2)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원칙
- 3)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방법

의사결정능력의 의미

의사결정능력이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다음의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며, 치매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얼마나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이해 능력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제공된 정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② 기억유지 능력*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억으로 보유할 수 있는 능력
- 결정에 필요한 시간 동안 관련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③ 비교검토 능력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④ 의사표현 능력

- 자신의 의사를 구두. 수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 * 치매환자 본인이 기억력 부족을 인식하고 메모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면, 기억 유지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스스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메모를 제공하거나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원칙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의사결정능력 평가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① 능력 추정의 원칙

모든 성인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즉시 그 사람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결정능력은 '있다' 또는 '없다'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② 시점별 평가의 원칙

의사결정능력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전과 오후의 차이
- 익숙한 화경과 낯선 화경의 차이
- 컨디션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
- 복약 여부에 따른 차이

③ 결정별 평가의 원칙

같은 사람이라도 의사결정능력은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상적 결정 (식사 메뉴 선택, 의복 선택 등)
- 재산 관련 결정 (일상적 지출 고액 재산 처분 등)
- 신상 관련 결정 (거소 결정, 의료행위 동의 등)

◇ 의사결정능력의 평가 과정에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의사결정능력은 단순히 '있다' 또는 '없다'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시간과 상황,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의사결정능력이 더 높을 수 있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이 어떻게,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평가만으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결론 내리기보다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에 앞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은 당면한 법적 결정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합니다.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은 결정해야 할 사항(예: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인지 단순한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의 의사결정능력을 사안에 따라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 유무로 단순히 판단하여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합니다. 모든 성인은 때로는 타인이 보기에 현명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할 때 주의할 점은, 치매환자의 결정이 후견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내용보다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의 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의 평가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는 것은 향후 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활동에 중요한 자료가됩니다. 이 기록은 치매환자에 대한 시험이나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사결정능력 평가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한다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방법

◇ 치매 정도에 따른 현존 능력 파악하기

치매가 진행되더라도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의사결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현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일상생활 관찰: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합니다.
- ② 대화를 통한 평가: 치매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자신의 욕구나 선호를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③ 간단한 과제 수행: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예: 간단한 계산, 물건 구매 등) 실제 상황에서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 ④ 전문가 평가: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현존 능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평가하기

의사결정능력은 결정의 종류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는 일상적인 식사 메뉴를 선택할 능력이 있지만, 복잡한 의료 처치에 대한 결정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이해 능력 평가: 치매환자가 주어진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

- 평가 방법
-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로 정보 제공하기
- 시각적 자료 제시하기
-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기
- 본인의 말로 다시 설명하도록 요청하기
- 평가 기준
- 핵심 정보를 이해했는가?
- 관련된 위험과 이익을 이해했는가?
- 대안의 존재를 인식하는가?
- ② 정보유지 능력 평가: 치매환자가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가?
- 평가 방법
-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내용 확인하기
- 다른 주제로 대화 후 재확인하기
-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확인하기
- 평가 기준
- 주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가?
- 일관된 대답을 하는가?
-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가?
- ③ 비교검토 능력 평가: 치매환자가 선택지를 비교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 평가 방법
- 구체적 선택지 제시하기 (2~3개로 제한)
- 각 선택지의 장단점 설명하기
- 선택에 따른 결과를 물어보기
- 선택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하기

- 평가 기준
-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는가?
-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④ 의사표현 능력 평가: 치매환자가 자신의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가?
- 평가 방법
-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시도하기 (구두, 문자/그림 카드, 손짓/표정 등)
- 편안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할 기회 제공하기
- 평가 기준
- 자신의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가?
- 일관된 의사표현이 가능한가?
- 타인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나누어 치매환자의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하여 일관된 답변을 하는지 확인 합니다.
- 치매환자가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치매환자에게 특정 선택을 한 이유를 질문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치매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에 걸쳐 평가를 진행합니다.

◇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며 평가하기

의사결정능력의 평가는 치매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치매환자를 단순히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전무용어나 복잡한 설명을 피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쉽게 전달합니다.
- 치매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정합니다. (예) 손짓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예)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치매환자가 집중력이 좋은 시간대에 진행합니다.
- 필요시 보청기, 돋보기 등의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 복잡한 의사결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각 단계에서 치매환자의 이해도와 선호를 확인합니다.
- 치매환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2-3가지 선택지로 제한하여 제시합니다.
-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치매환자의 상태가 좋은 날로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이렇게 합니다.

- 1)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원칙
- 2) 의사결정 지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 3) 의사결정 지원과 의사결정 대행의 관계
- 4)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대행의 방법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원칙

◇ 기본 원칙

- 1. 피후견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2.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하며, 쉽게 대리 결정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 3.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

- 1.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 2. 피후견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 3. 피후견인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 장단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 4. 결정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5. 정기적으로 결정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6.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피후견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 대리 결정의 기본 원칙

- 1. 의사결정지원을 다 하였음에도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결정이나 의사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결정으로 전환하되, 명확한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본인의 의사(추정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본인의 의사 추정조차 어렵거나 본인이 표명한 의사에 따를 때 중대한 위험이나 불이익이 예견되는 경우, 후견인은 본인의 신념, 가치관, 선호를 존중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대리 결정).
- 3. 대리 결정은 법적 보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의사결정을 미룰 수 없고, 달리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한 번 대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음번에는 다시 의사결정지원으로 돌아가서 의사결정능력의 추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 의사결정 지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의사결정지원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섬세한 균형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단계 🧾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하기

◇ 피후견인 본인의 역량 강화

- 본인의 자존갂과 성취갂이 일상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 '자신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존중받았다'는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사결정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후에 갑자기 의사결정지원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결정이 존중받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와 같은 일상적인 결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피후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지원자들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식 공유

-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해야 합니다.

평소 피후견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여러 지원자들 사이에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부족하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원자들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상의 대리 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직업윤리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지원자들 상호 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후견인을 포함한 지원자들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북을 함께 읽고,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 의사결정능력 평가하기

의사결정능력 평가는 후견인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업무입니다. 앞서 소개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 🐩 의사결정지원 활동하기

아래의 의사결정지원 방법은 특정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과 이해 촉진 방법

의사결정지원의 첫 번째 단계는 피후견인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정보는 피후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문용어나 복잡한 설명을 피하고, 피후견인의 인지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와 관련된 결정에서, '심부전'이라는 의학 용어 대신 '심장이 약해져서 피를 잘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이 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 정보는 단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혼란이 올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각 단계에서 피후견인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림, 사진, 도표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 이전을 결정할 때는 새로운 거주지의 사진을 보여주고, 현재 집과의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적절한 정보 전달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의력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시간대가 좋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관찰을 통해 최적의 시간대를 파악합니다. 물리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고, 적절한 조명과 온도를 유지합니다. TV, 대화 소리와 같이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는 제거합니다.
- 보조 도구의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력이 저하된 경우 보청기 사용을 확인하고, 시력 문제가 있다면 돋보기나 확대경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의사소통 카드나 그림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아니오 카드, 감정 표현 카드, 선호도 표시 카드 등 다양한 도구를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앱, 필기구를 활용한 메모나 그림 그리기도 유용합니다.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 간단한 그림이나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하면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 피후견인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이해하셨나요?" 라고 묻는 것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는 어떤가요?"와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본인의 말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어느 부분을 잘 이해했고, 어느 부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시간 간격을 두어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혼동하거나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제로 대화한 후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 확인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의사 표명 및 선호도 확인을 위한 방법

의사결정지원의 두 번째 핵심 단계는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와 희망, 선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접근을 통해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 피후견인이 편안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더 자연스럽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자주 가는 카페나 공원 등 본인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두르거나 압박감을 주지 않고,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피곤해 보이면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도 고려합니다.
- 피후견인의 의사표현 스타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대답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충분한 고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좋으신가요?"와 같은 폐쇄형 질문보다는 "○○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 입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대신, "○○요양원에 계신 ○○님처럼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단계적 질문법을 활용합니다.** 큰 주제에서 시작해서 점차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
 -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 말로 하는 의사소통 외에도 다양한 비언어적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때로 언어적 표현보다 더 정확한 의사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표정, 몸짓이나 자세, 목소리 톤의 변화
 - 특정 주제에서의 반응 변화
 - 신체적 긴장도의 변화
- 일상생활에서의 관찰 또한 중요합니다. 식사 메뉴나 TV 프로그램 선택, 옷 고르기 등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선호도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과거의 결정이나 행동 패턴을 참고하여,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때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 평소 피후견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어떤 상황을 가장 피하고 싶으신가요?"
 -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 가능한 경우,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시설 견학, 단기 체험 입소,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더 정확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을 개별 면담하여 진정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 특정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의사표현 차이
 - 갑작스러운 의사 변경이 있는 경우
 - 평소의 가치관이나 선호도와 맞지 않는 결정을 할 때

◇ 의사의 일관성 확인 방법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여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또는 컨디션이 다른 날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표명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일시와 장소, 참석자, 구체적인 대화 내용, 비언어적 표현, 주변 상황, 특이사항 등),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사나 선호도의 변화를 파악합니다. 만약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 의사결정지원의 실행과 모니터링

의사결정지원의 마지막 단계는 실제 결정을 도출하고 실행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정이 피후견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선택가능한 방안 검토하기

-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각 방안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 소요 비용, 필요 시간, 예상되는 이점과 위험성 등을 검토하기
- ② 피후견인 본인의 관점에서 선택지의 장단점 분석하기

선택지 A 자택 거주 지속

장점

-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가능
- 이웃들과의 관계 유지
- 자유로운 생활 가능

단점

- 안전 위험 증가
- 의료접근성 제한
- 고립 가능성

선택지 B

요양시설 입소

장점

- 24시간 케어가능
-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단점

- 새로운 화경 적응필요
- 사생활 제한
- 비용 부담

③ 가능한 경우, 최종 결정 전에 시범적으로 실행해보기

- 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경우: 단기 체험 입소

④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우기

- 실행계획(단기, 중기, 장기) 세우기
-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 역할 분담 정하기
-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 비상 시 대책 마련하기

⑤ 결정사항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 예시: 시설 입소 결정의 경우
- 1단계: 시설 견학 및 정보 수집
- 2단계: 단기 체험 입소
- 3단계: 주 2-3일 이용
- 4단계: 시설 정식 입소
- 5단계: 적응 기간 설정

⑥ 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네트워크 구축하기

⑦ 결정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모니터링)

- 평가 항목: 본인의 만족도, 목표 달성 여부, 예상치 못한 문제점, 관련자들의 평가, 비용 대비 효과, 지속가능성 등
- 평가 시기:
 - 단기 평가: 실행 직후 (1주일 이내)
 - 중기 평가: 적응 기간 중 (1-3개월)
 - 장기 평가: 안정화 단계 (6개월 이상)

⑧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드백 수집하기

- 본인과의 직접 대화
- 가족이나 친족의 의견
-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 전문가의 평가
- 객관적 지표 측정

⑨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정 실시하기

- 경미한 조정: 실행 방법의 수정
- 중간 수준의 조정: 지원 내용이나 강도의 변경
- 중대한 조정: 결정 자체의 재검토

4단계 🔭 의사결정지원 기록 및 평가하기

기록은 의사결정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지원이 적절한지 검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축적된 기록은 후견인 활동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며, 향후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의사결정 지원 과정, 본인의 의사표현 내용, 최종 결정 사항과 근거, 모니터링 결과, 관련자들의 의견,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무서화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의사결정지원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필요시에는 지원 방식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 이사결정 지원 방법 목록

1. 의사결정 지원의 기본 원칙

- 피후견인이 실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와 선호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정보 제공 방법

- ① 정보 전달 워칙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예: "심부전" → "심장이 약해져서 피를 잘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

- 단계적 정보 제공 (중요사항부터 순차적 전달)
- 선택지 제한 (2-3가지 핵심 선택지로 제한)

② 보조 도구 활용

- 시각적 자료(그림, 사진, 도표)
- 의사소통 카드 (예/아니오 카드, 감정표현 카드, 선호도 표시 카드)
- 디지털 도구 (태블릿 PC. 스마트폰 앱)
- 보조기구 (보청기, 돋보기, 확대경)

3. 최적의 의사소통 환경 조성

- ① 시간적 고려
- 최적의 집중력 시간대를 선택 (개인별 차이 고려)
- 충분한 시간 제공
- 필요시 결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② 물리적 환경

-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
- 적절한 조명과 온도
- 방해 요소 제거 (TV 소리, 타인 대화 등)
-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참석

③ 지지적 네트워크 활용

- 가족, 친구,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타인의 영향인지 구분
- 필요시 개별 면담 진행

4. 의사 확인 및 표현 방법

- ① 언어적 방법
- 개방형 질문 활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실제 사례나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하기
- 단계적 질문법 (큰 주제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 가치관과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대화

② 비언어적 신호 관찰

- 표정, 몸짓, 자세
- 목소리 톤의 변화
- 특정 주제에서의 반응
- 신체적 긴장도 변화

③ 일상 관찰

- 일상적 선택 상황에서의 선호도 관찰
- 과거의 결정이나 행동 패턴을 참고
- 실제 체험 기회를 제공 (시설 견학 등)

5. 이해도와 일관성 확인

① 이해도 확인 방법

- 구체적 확인 질문 활용
- 본인의 말로 재설명 요청
- 각 단계별 이해도 확인
- 선택지 비교 능력 확인
- 결정 이유를 확인

② 일관성 확인

-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확인
-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질문
- 상황과 맥락을 달리하여 확인
- 의사 표명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모니터링

의사결정 지원 활동 기록지 (예시)

일시	YYYY/MM/DD
장소	
참석자	
상황	
구체적인 대화 내용	- 본인의 반응
	- 관찰된 비언어적 표현
	- 주변 상황과 특이사항
결정 내용과 그 이유	
관찰된 변화	
향후 계획	
모니터링	- 정기적인 의사 확인
	- 선호도 변화 추적
	- 변화가 있을 경우 이유 탐색
	- 일관성 여부 점검
	- 관련자들의 의견
문제점	
조치사항	

피후견인이 선호하는 의사결정 지원 기록지 (예시) 1. 피후견인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환경 □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은 ()입니다. □ ()에서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와 같은 보조도구가 필요합니다. □ 기타: 2. 피후견인이 선호하는 정보 전달 방식 □ 열린 질문을 통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짧은 단어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을 선호합니다. □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선호합니다. □ 예시를 통한 설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반복 설명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선택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 적은 수의 선택지를 선호합니다. □ 기타: 3. 피후견인이 선호하는 의사결정 시간 □ ()의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편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 의사가 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여러 번의 상담 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 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기타: 4. 피후견인이 선호하는 의사결정 지원자 □ ()와 함께 있을 때 잘 결정합니다. □ ()와 함께 있으면 방해가 되고,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기타:

의사결정 지원과 대행의 관계

- ◇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시도합니다.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대리 결정으로 후견인이 결정합니다.
 - 가능한 모든 의사결정 지원을 다 했음에도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확인이 어렵거나, 본인이 표명한 의사를 실현하면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적 보호 관점에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
 -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 * 중대한 영향은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 본인에게 명백히 불이익한 선택인 경우,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그 발생가능성에 확실성이 있는 경우인지를 살펴서 판단합니다.
- ◇ 후견인이 대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우선적으로 본인의 추정적 의사에 기반하여 결정합니다.
 - 본인의 추정적 의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신념·가치관·선호를 최대한 존중한 최선의 이익에 기초하여 결정합니다.
 - 대리 결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시합니다.
 - 대리 결정을 한 번 했더라도 다음번에는 다시 의사결정능력 추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대리 결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래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 결정이 필요성 판단 체크리스트

1. 피후견인에게 충분한 의사결정 지원을 하였는가?
□ 본인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하였다. □ 본인에게 원활한 정보 전달 방식을 제공하였다. □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 의사결정을 돕는 지원자가 있었다. □ 다른 사람의 부당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다. □ 의사결정 기한 내에 가능한 지원이 모두 이루어졌다.
2.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어떠한가?
□ 의사결정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 본인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이 우려된다.
3.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은 어떠한가?
□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 □ 관련 정보에 대한 기억을 유지할 수 없다. □ 관련 정보를 비교하고 검토할 수 없다. □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4. 피후견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본인의 의사가 있다.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5. 피후견인의 의사가 피후견인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 본인이 표명한 의사(추정 의사 포함)를 실현할 경우, 불이익한 선택이 된다. □ 위 불이익한 선택의 결과는 회복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위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 대행의 방법

대리 결정 역시 피후견인 본인의 희망, 선호, 가치관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 결정은 제3자의 판단이나 객관적 이익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의향, 감정, 가치관을 반영한 '최선의 이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결정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 대리 결정을 위한 포괄적 정보수집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대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생활 이력, 가치관, 선호도, 일상적인 생활 패턴, 의사소통 방식, 대인관계, 특히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 중요한 삶의 사건에서의 선택, 반복된 희망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파악할 수있습니다.

◇ 피후견인의 의사 추정 및 최선의 이익 판단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후견인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과거의 선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본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 무엇일지를 논의합니다.

본인의 의사 추정이 어렵거나, 추정된 의사를 실현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 판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의 '최선의 이익'은 객관적·사회적 기준이 아닌, 피후견인 본인의 주관적 가치관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 결정에서는 시설의 편의성이나 안전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활 습관, 선호하는 환경,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선의 이익 판단 과정에서는 가능한 많은 선택지를 검토하고, 각 선택이 피후견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관점에서 각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선택지들을 조합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결정의 실행과 모니터링

대리 결정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결정된 사항을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결정 사항이 실행된 후에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 사항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결정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리 결정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추정부터 다시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이 이익 판단 방법1)

1.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의 연령, 용모, 행동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¹⁾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and the Law Socoety, ASSESSMENT OF MENTAL CAPACITY, 4th ed., 2015. 참조.

2. 본인의 모든 상황과 생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모든 상황과 생활 조건을 파악하여 판단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3. 의사결정능력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투병 중이거나 회복 직후의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을 경우,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은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본인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의 희망, 감정, 신념 및 가치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희망과 감정
- 본인이 언어, 문서, 태도나 행동으로 표시한 생각
- 당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신념 및 종교, 문화, 도덕, 정치적 가치관
- 그 밖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면 고려했을 사정

6.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보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 감정, 신념, 가치관에 관하여 정보를 지닌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 가족, 친지, 이웃,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지원에 있어서 권리 보장과 협력 체계

피후견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의사결정지원 과정의 전반에 걸쳐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옹호자로서 의사추정이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제3자의 자의적인 해석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피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문적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지원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이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사례를 검토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의 경우, 월 1회 후견지원회의를 통해 후견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지원회의에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거나. 피후견인에관한 치매안심센터나 외부기관의 사례회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사례, 이렇게 실천해요.

- 1) 주거와 돌봄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례
- 2) 재산 관리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례
- 3) 의료,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례
- 4) 어려운 의사결정 지원 사례

주거지 돌봄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례

주거와 돌봄은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와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인권과 자율성 존중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주 장소를 결정할 때는 현재 거주지를 유지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거주 환경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나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 결정에서는 피후견인의 하루 일과의 구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활동이 포함된 균형 잡힌 일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봄 계획에 있어서는 요양보호사 활용, 요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되, 피후견인의 선호도와 장단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 수준, 치매환자 돌봄 경험, 응급상황 대처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GPS 장치나 가스차단기 설치, 응급상황 대비 계획과 같은 안전 조치를 마련할 때에도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새로운 환경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때의 대응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후견인이 거부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가능한 한 피후견인에게 덜 제한적인 대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대리 범위의 결정이나,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 강제 입소는 공공후견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 결정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지원 사례

기본 정보

◇ 피후견인의 현재 상황

A씨는 66세로 자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뇌전증 및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집 맞은편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주 2회 이용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보호센터에 아침저녁으로 들르곤 합니다.

◇ 피후견인이 희망하는 삶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자택에서 살고 싶어 하며, 좋아하는 것을 먹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싶어 합니다.

◇ 생활이력과 후견제도 이용까지의 경과

- ○○에서 출생. 2남 중 차남
- 33세 : 부친 사망
- 34세: 어머니와 둘이 거주
- 55세 : 모친 사망 후 혼자 거주
- 2년 전(64세): A씨를 돌보던 형 사망
- 1년 전(65세): 치매 진단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

이후 A씨는 뇌전증 발작에 대한 불안으로 거의 매일 119를 부르고, 발작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약물 조절을 위해 입원 후 3개월 만에 퇴원했으며, ○○시 치매안심센터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직업이력

A씨는 음식점에서 조리 경험과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회의 개최

◇ 피후견인의 상황 변화

장기요양시설에서는 "곧 요양원에 입소하게 될 테니 단체생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경비를 봐야 한다"며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간호사는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우려하여, ①A씨의 약을 맡아 주간보호센터에서 복약관리를 하는 것, ②자전거 열쇠를 주간보호센터에 맡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다 그만두겠다"고 소리쳤고, 그 이후 간호사를 만날 때마다 소리 지르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시작한 계기

주간보호센터는 후견인에게 요양원 입소와 자전거 처분을 제안하였고, 후견인은 치매안심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의사결정지원 회의 제안

후견인은 A씨와 함께 향후 계획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지원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고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기로 함
- 본인의 의사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함
- 본인이 원하는 생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검토할 예정
- 본인에게 답변을 강요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열린 질문"으로 묻기로 함
- 회의는 본인이 활동적인 오전 시간에 자택에서 개최하기로 함

-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과거 이용했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무의하기로 함
- 회의의 목적은 신뢰관계가 있는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설명하고 후견인이 동행하기로 함
- 후견인은 복약 관리 필요성에 대해 주치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로 함

◇ 회의를 위한 준비

과거 이용했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한 결과, A씨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복약관리와 금전관리를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은 주치의에게 복약관리 필요성을 문의한 결과, "A씨가 잘 관리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부터 "A씨는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다른 직원이나 이용자에게는 소리를 지르는 일은 없다. 요양원 입소는 이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피후견인에 대한 설명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후견인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A씨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다"고 회의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약도 잘 먹고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하냐"며 "이제 (서비스는)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A씨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방법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하자, A씨가 마지못해 회의를 수락하였습니다.

- A씨의 자택에서 오전 시간대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고, 회의 참석자에 대해 논의한 결과, A씨는 "주간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와도 좋지만, 간호사가 오는 것은 싫다"고 했습니다.
- A씨는 "반려견과 살고 싶다", "좋아하는 것을 먹으며 살고 싶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으며. 즐겨하는 활동으로 "자전거로 동네를 둘러보는 것", "반려견을 돌보며 함께 노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 "반려견이 죽는 것"을 말했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희망으로는 "예전처럼 집에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주간보호 센터에 가는 것은 싫다", "할머니들만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회의 후, 후견인은 A씨의 평소 생활이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참여가 필요 하다고 느꼈고, 과거 A씨가 이용했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 의사결정지원 회의 진행 및 결정 사항

- (시간 및 장소) ○월 ○일 9시 30분, A씨 자택
- (참석자) A씨, 후견인, 치매안심센터 직원,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관장,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

회의 시작 전에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이 회의는 A씨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회의입니다. A씨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A씨가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여 회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A씨는 미리 준비된 메모지를 참고하여 자신의 일상,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약관리 방법과 주치의의 의견이 공유되면서 지원팀의 불안감이 해소되었습니다.
- 후견인이 "자전거 사고가 걱정되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배상책임보험 안내책자를 보여주자, A씨가 관심을 보였고 보험 가입을 결정 했습니다.
- A씨는 "예전처럼 (활동지원사가)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와 방문간호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과

회의 후, 활동지원서비스와 방문간호가 도입되어 A씨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

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간보호센터에 들르는 것은 계속했지만, 간호사와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피후견인이 의사 추정에 기반한 대리 결정

◇ 피후견인의 상황 변화

이후 3년이 경과하였고, A씨는 주치의의 "염분을 제한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주 2회 주간보호센터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뇌경색이 발생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심한 마비가 남아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은 주치의로부터 "언어장애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퇴원을 앞두고 의료사회복지사와 후견인이 A씨의 의향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할지, 요양원에 입소할지, 재가생활을 시도할지의 3가지였고, A씨에게 그림, 사진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문자판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주일 간격으로 시간대를 바꿔가며 다시 시도했지만 A씨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언어치료사,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현 시점 에서는 다른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유일하게 반려견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냈습니다.

◇ 의사결정능력 평가 및 대리 결정의 검토

주치의는 "더 이상 퇴원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요양병원으로 전원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은 사례회의를 통해 A씨의 의사결정능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사가 주도하고, 후견인과 치매안심센터가 이를 지원했습니다. 평가 결과, A씨의 입원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기한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지원 방안

중에서 A씨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그림과 사진을 사용한 설명
- 문자판을 사용한 의사표현 지원
- 반복적인 설명 제공
- 시간대를 달리하여 설명 시도
- 의사와 언어치료사. 기타 지원자(방문간호사와 활동지원사)로부터의 조언

다른 가능한 지원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방안은 없었고,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리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 의사 추정에 기반한 대리 결정

A씨의 의사를 추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요양급여계획서, 활동지원기록, 서비스 실시기록표, 개인정보기록, 반려견 사진 등이 준비되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서 논의한 결과, A씨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나도 늙어서 걷기 힘들어졌네, 반려견이랑 같이 여기 올까?"라고 자주 말했다는 점과, 반려견 사진을 보여줬을 때 A씨가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A씨의 의사추정에 기반한 대리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다니던 주간보호센터에 인접한 요양원에 입소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과

퇴원 후, A씨는 주간보호센터 부설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은 이웃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여 A씨와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T씨는 "그러니까", "그거야"와 같은 말만 할 수 있지만, 표정이 풍부해져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과 만날 때는 밝은 표정을 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산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산 관리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리 관리와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후견인 개인 재산을 철저히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지출이나 제3자에 의한 사기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은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관리 과정에서는 피후견인의 현재 의사와 선호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영향력이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 보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부하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과거의 가치관과 습관을 고려하되 현재와 미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후견감독인과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자산 상태와 정기적 수입·지출, 그리고 미래의 재정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 받지 않은 재산 관리 결정, 재산 매각이나 대출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산관리 의사결정 지원 사례 1

◇ 피후견인의 현재 상황

B씨는 69세로 자택에서 독거로 지내고 있습니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고, 주 3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B씨는 국민연금을 월 120만원 받고 있고, 생활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 피후견인이 추구하는 삶

B씨는 평생 자신의 돈은 스스로 관리해왔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며, 외부의 도움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 후견제도 이용까지의 경과

- 과거 ○년 간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 2년 전 : 경증 치매 진단

- 1년 전 : 통장 잔고 확인을 자주 하며 불안해하기 시작

- 6개월 전: 공과금을 3개월째 미납한 사실이 발견됨

- 3개월 전 : 공공후견인이 선임됨

◇ 최근 상황

B씨는 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도 여전히 스스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비를 2개월 미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B씨는 "내가 평생 내 돈을 관리해왔는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관리하냐"며 후견인의 금전 관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시작한 계기

후견인은 B씨와 함께 금전관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은행 직원, 후견인이 모여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B씨의 은행 근무 경력을 존중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B씨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회의 장소와 시간대가 선정되었습니다.
- B씨가 평소 신뢰하는 은행 직원에게 회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 피후견인에 대한 설명

후견인과 은행 직원이 B씨를 방문하여 금전관리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으나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회의

- (시간 및 장소) ○월 ○일 오전, B씨가 이용하는 은행 상담실에서 진행
- (참석자) B씨, 후견인, 은행 담당자,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회의에서는 B씨의 은행 근무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현재 겪고 있는 금전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B씨와 후견인이 함께 금전관리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정 사항

- 생활비 통장은 B씨가 관리하며, 월 4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주요 고정비용(공과금, 주간보호센터 이용료)은 자동이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매주 은행에서 B씨와 후견인이 함께 통장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 B씨가 원할 때 언제든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

- B씨는 "내가 평생 해온 통장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매주 은행에서 후견인과 함께 통장 정리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 주가보호센터 이용료 미남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의사결정 지원 사례 2

◇ 피후견인의 현재 상황

C씨는 72세로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 중입니다. 시설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며, 생활비로 약 2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피후견인이 추구하는 삶

C씨는 평생 교회생활을 했고 매월 헌금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절약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싶어합니다.

◇ 후견제도 이용까지의 경과

- ○년 전 : 경증 치매 진단

- ○년 전 : 남편 사망 후 혼자 생활

- 2년 전: 기억력 저하로 통장관리 어려움 발생

- 1년 전 : 요양원 입소

- 6개월 전 : 공공후견인 선임됨

◇ 최근 상황

C씨는 요양원 입소 후에도 매주 요양원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원 담당 목사가 연락하여 C씨가 매월 10만원씩 헌금하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C씨의 월 수입에서 요양원 기타 비용 및 생활비를 제외하면 약 10만원 정도 남는 상황입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시작한 계기

월 10만원의 헌금이 C씨의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C씨와 함께 적정 헌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사결정지원 회의 준비

친한 이웃, 요양원 사회복지사, 담당 목사를 참석자로 하여 의사결정지원 회의를 계획하였습니다. C씨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양원 상담실에서 오전 시간대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후견인에 대한 설명

C씨에게 의사결정지원 회의의 목적을 설명하자, 참석에 동의하였습니다. "평생 헌금을 해왔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싶다"면서도 "돈이 부족할까 걱정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 의사결정지원 회의 진행

의사결정지원 회의에서 C씨는 "교회 헌금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평생 동안 해왔다. 현재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걱정이지만 조금이라도 헌금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결정 사항

- C씨의 신앙생활 가치관을 존중하되 현실적인 경제상황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 매월 5만원씩 정기 헌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명절 등 특별한 때는 추가로 3만원까지 헌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개월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결과

- C씨는 결정된 헌금 금액에 만족하며, 정기적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 3개월 후 상황을 다시 점검하여 필요시 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의사결정 지원 사례 3

◇ 피후견인의 현재 상황

D씨는 75세로 중등도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금 월 200만원을 수급하고 있고, 예금 약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양원비로 월 16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이 추구하는 삶

D씨는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원합니다. 자신을 돌볼 보호자가 없어 독거 생활에 불안감을 느껴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D씨는 시설에서 남은 재산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후견제도 이용까지의 경과

- ○년 전 : 배우자 사망

- 3년 전 : 치매 진단

- 2년 전: 아들이 금전 관리를 맡았으나, 계좌에서 무단인출 후 연락이 두절됨

- 6개월 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으로 공공후견인이 선임

- 추가적인 경제적 착취의 위험이 존재

◇ 최근 상황

D씨는 매월 요양원비 납부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재산관리가 필요합니다. D씨는 "돈 관리가 걱정된다"거나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라며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시작한 계기

후견인이 D씨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후견감독인, 요양원 사회복지사,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모여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D씨의 현재 경제상황과 향후 필요 비용을 분석하였습니다.
- 요양원비와 의료비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D씨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결정지원 회의 진행

(시간 및 장소) ○월 ○일 오후, 요양원 상담실에서 진행 (참석자) D씨, 후견인,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요양원 사회복지사

◇ 결정 사항

- 매월 요양원비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였습니다.
- 의료비 지출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D씨의 일상적 용돈 사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3개월 후, 재산관리 상황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결과

- D씨는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결정한 사항에 안도하며 만족해하였습니다.
- 요양원비가 정기적으로 납부되고, D씨의 용돈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의료비 지출을 위한 예비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 의료,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사례

의료,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후견인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료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방법, 예후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관한 의료진과의 대화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치료 결정에 따른 위험과 이점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후견인 자신의 선호도가 아닌, 피후견인이 원했을 법한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료 결정에서는 가능한 한 피후견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치료의 내용과 필요성을 쉽게 설명하고, 피후견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고려하여 치료와 돌봄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치료의 부작용이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합니다. 중요한 의료 결정 과정은 문서로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합니다.

◇ 치료에 관한 결정

치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환자의 현재 상태와 예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약물 관리에서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치료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과거 선호도와 가치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연주의적 치료를 선호했던 분이라면, 이를 존중하며 현재의 의료적 필요와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소통에서 피후견인의 배경을 잘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건강 관리

불안, 우울, 공격성 등의 정신행동증상에 대해서는 약물과 비약물적 접근을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선호와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적 건강관리

치매환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질병이 진행된 후에야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검진과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구강 관리나 시력, 청력 검사 등 기본적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치매환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치의나 가까운 응급실의 연락처를 휴대하고, 피후견인의 주요 질환 및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u>치매공공후견의 경우, 주로 특정후견 유형으로 진행되므로 의료 관련 결정 대리권의</u>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 검사 관련 의사결정 지원 사례

◇ 피후견인의 현재 상황

E씨는 63세로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도 지적장애가 있으며 경도 치매로 진단 받았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의심 소견이 나왔으나, 정밀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피후견인이 추구하는 삶

E씨는 산책을 좋아하고, 텃밭 가꾸기를 즐깁니다. 병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후견제도 이용까지의 경과

- 2년 전: 누나의 사망으로 돌봄 공백 발생

- 1년 전 : 공공후견인 선임

- 6개월 전 : 복통을 자주 호소하였으나 병원 가기를 거부함

◇ 최근 상황

E씨는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의심 소견이 나왔으나, "병원이 무섭고 주사 맞기 싫다"며 정밀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설득을 시도했으나 E씨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주치의는 후견인에게 조속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시작한 계기

E씨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지원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주치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후견인이 모여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병원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 F씨가 평소 선호하는 활동과 사람을 통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검사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진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가급적이면 덜 침습적인 검사 방법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피후견인에 대한 설명

후견인과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E씨가 좋아하는 텃밭에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싫다"라고만 하였으나, 이후 "주사 맞으면 아파서"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표현하였습니다. 의사결정지원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가면 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 의사결정지원 회의 진행

(시간 및 장소) ○월 ○일 오전, E씨가 편안해하는 복지관 상담실에서 진행 (참석자) E씨, 후견인, 주치의,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사회복지사

♦ 논의 내용

-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여 검사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 E씨가 겪고 있는 복통과 검사의 필요성을 연결하였습니다.
- 검사 시 사회복지사가 계속 동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최소 침습적인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검사 및 향후 입원 시 필요한 계약절차와 비용납부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 결정 사항

- 우선 덜 침습적인 분변잠혈검사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가 동행하여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사가 필요한 경우 국소마취크림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검사를 받은 후, 평소 원하던 텃밭 용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결과

- 후견인이 의료진에게 특정후견의 의미와 E씨의 의사결정능력을 설명하였고, 의료진이 E씨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E씨는 분변잠혈검사에 동의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내시경 검사도 E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습니다.
- E씨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정기검진도 후견인과 함께 원활하게 받고 있습니다.

4

어려운 의사결정 지원 사례

지원 의사결정이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는지 확인합니다.

의사결정지원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표정, 반응,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의사결정지원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확인을 받습니다. 가능하면 영상이나 음성 기록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공동 의사결정 참여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복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팀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친구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의사결정이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음을 보장합니다.

3. 진정한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적 보장을 확인합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시간대나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확인하고, 구두 대화, 서면 작성, 그림 카드, 손짓, 표정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합니다. 피후견인이 가장 편안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의 부당한 영향력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인합니다.

의사결정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피후견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쪽, 후견인 간의 갈등 조정

갈등은 주로 치매환자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환자가 요양원 입소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해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오랜 가족사나 감정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 모든 결정에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지침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피후견인이 아닌 가족들의 편의와 이익만을 우선시할 수 있지만, 후견인은 반드시 피후견인의 관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주택을 처분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가족들이 집을 팔아 안전한 자산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더라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2. 피후견인의 현재와 과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치매로 인해 현재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렵더라도, 과거의 가치관이나 선호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해온 분이라면 고가의 요양 서비스에 대해 심리적 저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3 모든 관련자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가족은 피후견인의 과거 모습과 선호를 잘 알고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의견이나 감정적인 반응 속에도 중요한 통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관련자가 자신의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최종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갈등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단계

각자의 입장과 우려사항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나 평가하기 보다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경청하며,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후견인은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2단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표면적인 갈등 이면에 숨어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 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입소를 둘러싼 갈등은 과거의 관계 문제나 돌봄부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주장하고 우려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전문가의 의견,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대안을 탐색하기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검토하되, 이때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입소와 재가 돌봄의 양자택일 외에도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가 돌봄이 가능하더라도, 치매의 진행에 따라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합의 도출하기

완벽한 해결책이 없더라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 모든 관련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문서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합의사항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와 과정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환자의 보호와 자유 사이의 균형점 찾기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중요한점은 이러한 위험이 삶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상 위험이 있다고 해서 치매환자를 계속 침대에 누워만 있게 한다면 신체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보호와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최소 제한의 원칙

위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험을 완전히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험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환자가 느끼는 위험과 보호자나 의료진이 느끼는 위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 관리의 목표는 당사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중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낮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GPS 기기를 활용하거나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평가의 원칙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불안이나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 실제보다 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잠**재적인 위험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는 **위험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발생 확률이 높지만 덜 심각한 위험과, 발생 확률이 낮지만 심각한 위험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나 사회복지사 등 지원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상시의 위험 관리 방법과,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록으로 남기고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치매 상태는 계속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제한 사항이라도 주기적인 재검토해야 합니다.

3. 개별화의 원칙

치매환자의 상황과 필요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똑같이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개인의 성격, 생활습관, 가족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획일적인 제한을 하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활동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시간대에 불안해하거나 배회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선호도와 생활패턴**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아침 산책을 즐겨온 사람이라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후격인은 피후격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의 첫 번째 책임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항상 피후견인을 한 인격체로 대하며, 그들의 감정, 선호, 가치관을 존중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이 특정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특정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음악 등 일상적인 선호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존중들이 모여 피후견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책임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타인이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한 한 많은 영역에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치매 단계에서는 복잡한 재정 관리나 의료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선택(예: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등)은 충분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후견인은 복잡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공하되, 일상적인 결정은 피후견인 스스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후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책임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중요한 결정은 후견인이 대신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의학적 이익이나 재정적 이익만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인의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적 처치를 결정할 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평소 가치관과 선호, 그리고 그 처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자산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는 피후견인의 과거 이력, 가치관,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평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중요시했던 사람이라면,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면, 가족과의 교류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은 결정을 내릴 때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피후견인 본인의 의견을 듣고, 가족이나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 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복잡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후견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후견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지원 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찰하며, 자신의 후견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하며,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고, 항상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북은

일본 최고재판소, 후생노동성,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020년에 발표한 '의사결정지원을 고려한 후견사무 가이드라인'을 참고자료로 하였으며, 2012년 알츠하이머 스코틀랜드(Alzheimer Scotland)에서 제작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실용 가이드', 2018년 호주 인지저하 파트너십 센터(Cognitive Decline Partnership Centre)에서 발간한 '의사결정 지원-치매환자,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한 가이드'를 함께 참조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외 치매공공후견 활동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후견사무매뉴얼', '후견사무매뉴얼 핸드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사무매뉴얼 및 핸드북 PDF 파일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집필진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교수/변호사) 노수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편집진

고임석(중앙치매센터 센터장) 서지원(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최선영(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지원팀 팀장) 문은정(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지원팀 변호사) 김현진(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지원팀 사원)

치매공공후견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북**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고임석

발행처 중앙치매센터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중앙치매센터(을지로 6가, 국립중앙의료원)

전 화 1666-0921

홈페이지 http://www.nid.or.kr

이쇄처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